

「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1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0월 20일

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사회복지국장 박 경 하

나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」 제44조에 의한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며 ‘복지위원’ 조항이 삭제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폐지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이 사라진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인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며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역할이 중복되는 <복지위원>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어, 관련된 우리 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